강북구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대여서비스 이용규정

(제정) 2018.03.22.
(일부개정) 2019.04.30.
(일부개정) 2022.04.0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북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설립하고, 센터가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 내 장난감대여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사항에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시 장난감대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제2조 (정의)

1. “장난감대여서비스”라 함은 장난감이 필요한 회원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장난감대여서비스 가입신청서와 가입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센터가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대여물품”이라 함은 회원이 대여한 장난감, 장난감 보관용 주머니, 장난감 이름표, 이름표 고리를 총칭한다.
4. “센터”라 함은 장난감대여서비스를 운영하는 강북구 가족센터를 말한다.

제3조 (규정의 효력 및 개정)

1. 본 규정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와 장난감대여 공간 내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센터는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센터가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센터 홈페이지와 장난감대여 공간 내에 적용 일자 14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보한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장 회원 가입

제4조 (장난감대여서비스 이용)

1. 장난감대여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월~금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이다. (단,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진행시에는 장난감대여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상시프로그램 일정은 전달 공지한다. 또, 센터 여건에 따라 이용시간은 확대될 수 있다.)
2. 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이용시간에서 제외한다.
3.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및 센터 휴관일은 이용이 불가하다. (단, 센터 여건에 따라 토요일 운영이 변경될 수 있다.)
4. 소독 및 청소를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지정 기간에 휴관하며 기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4일 이전에 공지할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5.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 시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후에 장난감을 대여한다.

제5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 대상자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강북구지역 거주 주민 또는 강북구 지역 소재 직장 근무자로 한다.
   ① 회원가입 대상자를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담당자가 확인하고 회원에게 반환한다.
   ② 강북구지역 소재 직장 근무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회원에게 반환한다.
   ③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을 담당자가 확인하고 회원에게 반환한다.
2. 회원가입 대상자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고,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고 일주일 후 회원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연회비는 지정계좌를 통해 입금하며,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비로만 사용한다.(장난감 AS, 장난감 소독비, 장난감 구입비 등)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장난감대여서비스 가입신청서 및 장난감대여서비스 가입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여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② 센터에서 제시하는 이용 이용규정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연회비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둥이(세 자녀이상)가족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의 경우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3. 회원의 자격은 본인 가입 당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4.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장난감대여서비스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 개발, 통신장애, 시설 및 장난감 소독,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4.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센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
2.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담당자에게 통지한다.
3. 회원카드는 본인 및 가족 외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하며, 타인 양도 또는 타인 대여 사실의 발각 시 대여가 중지된다.
4. 대여 장난감은 센터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약속된 날짜에 반드시 반납한다.
5. 대여 장난감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출기간동안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한다.
6. 대여한 장난감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으며 고장, 파손, 분실된 경우 대여자가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우선으로 한다. 장난감의 A/S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이 변상하도록 한다.

단, 장난감의 노후 상태로 인한 파손은 센터에서 처리한다.
- 구입 1년 미만 : 구매가격의 100% 변상
-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 구매가격의 70% 변상
- 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 : 구매가격의 50% 변상
- 구입 3년 이상 ~ 4년 미만 : 구매가격의 30% 변상
- 구입 4년 이상 : 구매가격의 10% 변상
- 장난감 봉투를 분실한 경우 500원으로 변상한다.

7. 회원은 대여 장난감에 부착된 바코드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모든 종류의 필기구등으로 낙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심하게 낙서되어 있을 경우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8. 회원의 부주의 또는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 회원이 책임을 진다.
9. 대여 장난감을 3회 이상 파손 및 분실할 경우 회원 자격이 3개월간 정지 된다.
10. 장난감대여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 (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등)

1. 센터는 회원가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 사전 동의 없이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④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⑤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⑥ 가입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⑦ 센터의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⑧ 회원이 물품의 고장 또는 파손 등에 대한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회원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회원카드 반납 및 탈퇴서 접수 후 탈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회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가입 후 대여 횟수가 없는 경우 100%환불
   - 가입 후 대여 횟수가 1회인 경우 50%환불
   - 가입 후 대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환불 불가
4. 제1항에 따라 회원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대여서비스 이용

제9조 (대여 신청)

1. 회원은 직접 방문하여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회원은 센터에서 지정한 대여물품에 대해서만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대여물품의 대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대리인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으로만 제한되며, 대리인에 한해 회원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여 기간 및 연장)

1. 대여개수는 최대 1가구당 장난감 2점, 월 4회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2. 대여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14일간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여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회원은 반납 예정일 전날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4. 반납 후 3주 이내에 동일한 품목으로 대여할 수 없다.
5. 회원은 담당자와 함께 대여물품 구성품의 개수 및 상태, 작동여부를 확인한 후 대여한다.
6. 연체,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제11조 (반납)

1. 회원은 대여기간 내에 대여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2. 담당자는 대여 장난감의 훼손이나 파손, 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은 담당자의 확인과정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대여 장난감은 대여한 자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반납할 수도 있다. 단, 대리인을 통하여 반납하는 경우 대여 장난감에 대한 확인 권한은 대리인에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4.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익 일을 반납일로 지정한다.

제12조 (연체)

1. 연체 시 휴관일을 포함한 연체일수 만큼 대여정지가 부과되며, 3회 연체 시 30일간 대여정지, 총 연체누적일이 30일인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한다.
2. 대여물품의 일부 부속품을 미반납한 경우에도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연체일이 부과된다.
3.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체일을 감면한다.
   ① 회원 및 자녀의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반납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② 변상을 위한 기간의 경우

제13조 (변상)

1. 대여 중 회원이 대여물품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센터는 그 상태에 따라 발생한 변상가격을 해당 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며, 회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대여 중 대여물품 전체를 분실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파손한 경우 센터는 해당 회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회원은 대여물품 구입 시기에 따라 7조 6항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3. 모든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 기한은 파손과 분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대여물품의 이름표나 보관용 주머니가 분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 해당 회원에게 그 책임을 물 수 있으며, 회원은 지정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5. 회원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비 3천원이 부과된다.

부칙<2022.04.07.>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